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법정손해배상책임 강화 및 조사 실효성 제고 등 >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00호)
- 김용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13호)
- 박범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48호)
- 한창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20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10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10
2. 법정손해배상책임 강화(안 제39조의2)	11
3. 법정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제3조)	23
4. 자료보전 명령 도입(김용만의원안 제63조)	27
5. 유출정보 유통 처벌(박범계의원안·한정애의원안 제59조제2항 및 제71조)	36
6. 실태점검 정례화(김용만의원안·박범계의원안 제63조의2) ··	44
7. 자료제출요구·시정조치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김용 만의원안·박범계의원안·한정애의원안·한창민의원안 제63조의3 등)	48
8. 긴급보호조치 명령 또는 임시중지명령 근거 신설(김용만의원 안 제64조·한창민의원안제64조의3 등)	65
9. 영업정지 요청 근거 마련(한창민의원안 제64조제4항)	76

I. 제안경위

1. 한정애의원안

가. 제 안 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2026. 2. 12.

다. 회 부 일: 2026. 2. 13.

2. 김용만의의원안

가. 제 안 자: 김용만의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2026. 2. 12.

다. 회 부 일: 2026. 2. 13.

3. 박범계의의원안

가. 제 안 자: 박범계의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2026. 2. 12.

다. 회 부 일: 2026. 2. 13.

4. 한창민의의원안

가. 제 안 자: 한창민의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2026. 4. 9.

다. 회 부 일: 2026. 4.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한정애의원안

가. 제안이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나 유출에 따른 실질적 손해배상,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근절,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책임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실효적인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여부 확인 및 원인 분석 등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보존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제재 수단이 미비하여 사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료제출 거부, 출입·검사 방해, 시정조치 불이행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외에 실효적인 이행 강제수단이 부족하여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자료보전 명령,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법정손해배상책임 강화(안 제39조의2 개정)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없음을 전반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정보주체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거래 금지 및 처벌 신설(안 제59조, 제72조 개정)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구매·제공받거나 제공·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3) 자료보전 명령 도입(안 제63조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원인 분석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함.

4)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안 제63조의3 신설 등)

자료제출 거부, 출입·검사 방해, 시정조치 불이행, 공표명령 불이행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이행기한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함.

2. 김용만의원안

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법원이 배상한도 내에서 여러 정황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이 엄격하여 손해배상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한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 확산 차단,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보전 등 조사·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음.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조사 비협조 및 자료제출 거부,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정보주체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 및 처분을 위하여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이행강제금 제도 및 긴급 보호조치 명령을 도입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법정손해배상책임 강화(안 제39조의2 개정)

법정손해배상 청구요건에서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전반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제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함.

2) 자료보전 명령 도입(안 제63조 개정)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여부의 확인, 원인 분석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함.

3) 개인정보 보호 사전 실태점검 정례화(안 제63조의2 개정)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분야 및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한 상시적 관리체계를 구축함.

4)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안 제63조의3 신설)

자료제출 거부, 출입·검사 방해,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공표명령 불이행 등에 대하여 이행기한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함.

5) 긴급 보호조치 명령 신설(안 제64조 개정)

법 위반이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침해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위원회가 즉시 침해행위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가 가능하도록 함.

3. 박범계의원안

가.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이 엄격하여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어렵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거래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이후의 조사·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고, 자료보전 등 초기 대응수단이 부족하여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자료제출 거부,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 외에 실효적인 이행 확보 수단이 부족하여 신속한 조사를 통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피해구제 수단을 실질화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실태점검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법정손해배상책임 강화(안 제39조의2)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

조 또는 훼손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만 제외하도록 하여 손해배상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거래 금지 및 처벌 신설(안 제59조 및 제71조)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구매·제공받거나 제공·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3) 자료보전 명령 도입(안 제63조)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여부의 확인, 원인 분석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함.

4) 개인정보 보호 사전 실태점검 정례화(안 제63조의2)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한 상시적 관리체계를 구축함.

5)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안 제63조의3 신설)

자료제출 거부, 출입·검사 방해,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공표명령 불

이행 등에 대하여 이행기한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함.

4. 한창민의원안

가.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행정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정손해배상 요건이 엄격하여 개인정보 유출등 피해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효적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계속되거나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시킬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명령 등의 불이행에 대한 집행수단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영업정지 요청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현행 법정손해배상책임의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하고, 개인정

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거나 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유출등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때에 한하여 면책되도록 함(안 제39조의2).

2) 시정조치 명령, 임시중지명령, 공표명령 등의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3 신설).

3)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시정조치만으로는 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되고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단체 등이 그 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 3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각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료 미제출·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자료보전 명령 및 긴급보호조치 명령 등을 도입하는 내용임.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한정애 의원안	김용만 의원안	박범계 의원안	한창민 의원안
법정손해배상책임 강화(고의·과실 요건 삭제)	○	○	○	○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금지 및 처벌 신설	○	-	○	-
자료보전 명령 도입	○	-	○	-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 자료 미제출, 시정조치 불이행 등의 경우	○	○	○	○
*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한도	1일당 200만원	1일당 500만원	1일당 200만원	1일당 500만원
개인정보 보호 사전 실태점검 정례화	-	○	○	-
긴급 보호조치 명령 신설	-	○	-	-
임시중지명령 신설	-	-	-	○

2. 법정손해배상책임 강화(안 제39조의2)

□ 현행법 제39조¹⁾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39조의2²⁾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등(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 된 경우 법정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더라도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할 수 있음.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삭제 <2015. 7. 24.>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7. 24., 2023. 3. 14., 2026. 3. 10.>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6. 3. 10.>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청구는 정보주체가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한도인 300만원 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용이하게 권리구제를 하기 위한 제도로 2015. 7. 24. 개정 시 도입되었음. 「개인정보 보호법」 외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에도 법정손해배상청구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³⁾.

현행법 제39조의2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책임을 규정하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비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인과관계 파악을 하기 어려운 입증 역량의 비대칭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각 개정안은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에서 ‘고의 또는 과실’을 삭제하고,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등이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등에는 면책되도록 정하고 있음.

3) 관련 법률 조문은 [참고자료] 참조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을 용이하게 인정하려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 없
 음이라는 현행 면책 요건이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아, 면책
 요건에서 ‘고의 또는 과실’을 삭제함으로써 정보주체가 법정손해배상제
 도를 통해 보다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각 개정안별 내용을 살펴보면, 고의·과실 요건 삭제 등의 내용은 동일
 하나, 법정손해배상책임의 면책사유에 대해서는 다소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한정애의원안	김용만의원안	박범계의원안	한창민의원안
제39조의2(법 정 손 해 배 상 의 청구) ①	제39조의2(법 정 손 해 배 상 의 청구) ①	제39조의2(법 정 손 해 배 상 의 청구) ①	제39조의2(법 정 손 해 배 상 의 청구) ①	제39조의2(법 정 손 해 배 상 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	-----	-----	-----	-----
에도 불구하고	-----	-----	-----	-----
정보주체	-----	-----	-----	-----
는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	처리자가 처	처리자가 처	처리자가 처	처리자가 처
의 또는 과	리하는----	리하는 ---	리하는 ---	리하는----
실로 인하	-----	-----	-----	-----
여 개인정보	-----	-----	-----	-----
가 분실·도	-----	-----	-----	-----
난·유출·	-----	-----	-----	-----
위조·변조	-----	-----	-----	-----

현행	한정애의원안	김용만의원안	박범계의원안	한창민의원안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 0만원 이하 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 을 손해액으 로 하여 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 리자는 고 의 또는 과 실이 없음을 입증하 지 아니하 면 책임을 면할 수 없 다. <u><신설></u>	----- ----- ----- ----- ----- ----- ----- --. <u><후단 삭제></u>	----- ----- ----- ----- ----- ----- ----- --. <u><후단 삭제></u>	----- ----- ----- ----- ----- ----- ----- --. <u><후단 삭제></u>	----- ----- ----- ----- ----- ----- ----- --. <u><후단 삭제></u>
	②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 인정보가 분 실·도난· 유출·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에는 해당 정보주체에 게 손해를	②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 인정보가 분 실·도난· 유출·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에는 해당 정보주체에 게 손해를	②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 인정보가 분 실·도난· 유출·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에는 해당 정보주체에 게 손해를	②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 인정보가 유 출등이 된 경우에는 해 당 정보주체 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다 만, 다음 각

현	행	한정애의원안	김용만의원안	박범계의원안	한창민의원안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처리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처리자가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처리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처리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처리자가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 2.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처리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처리자가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 2.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현행	한정애의원안	김용만의원안	박범계의원안	한창민의원안
		<u>하지 아니하</u> <u>다.</u>	<u>록 개인정</u> <u>보 처리자</u> <u>가 제29조</u> <u>에 따른</u> <u>안전성 확</u> <u>보에 필요</u> <u>한 조치를</u> <u>다한 경우</u> 2. <u>개인정보</u> <u>의 분실·</u> <u>도난·유</u> <u>출·위조</u> <u>·변조 또</u> <u>는 훼손이</u> <u>정보주체</u> <u>에게 책임</u> <u>이 있는</u> <u>사유로 발</u> <u>생한 경우</u>	<u>해당 정보</u> <u>주체의 고</u> <u>의 또는 중</u> <u>과실로 발</u> <u>생한 경우</u>
②·③ (생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각 개정안의 법정손해배상책임 면책사유를 살펴보면,

<한정애의원안>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출등이 발생했음을 입증한 경우, <김용만의원안>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9

조4)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로서 (and)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출등이 발생했음을 입증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9. 12.>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나.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다.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 기준의 설정 및 운영
다.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 다만,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인증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나.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라. 그 밖에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점검 및 이의 확인·감독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
다. 그 밖에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해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설치·운영과 주기적 갱신·점검 조치
 7.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박범계의원안 및 한창민의원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 또는 개인정보 유출등이 정보주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한창민의원안은 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로서, (and)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출등이 발생했음을 입증한 경우에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별 법정손해배상책임 면책 요건 비교 >

구분	면책요건			
한정애의원안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했을 것
김용만의원안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 할 것	(and)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했을 것
박범계의원안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 할 것	(or)	정보주체의 귀책사유	(and)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했을 것
한창민의원안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 할 것	(or)	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	(and)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했을 것

- 현행법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등이 자신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 면책이 될 수도 있으나, 개정안들에 따르면,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만 면책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됨.

□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의 확산 가능성 및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기업 등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개별 정보주체의 반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제 배상책임 인정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들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법정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과실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사실상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 원칙에 반한다는 법무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의 의견과,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법무부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법정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게 되므로(무과실책임), 그 청구요건이 과도하게 완화되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온라인쇼핑협회는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며, 특히,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어 침해사고의 원

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외부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에는 기업 또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임.

- 대한의사협회는 민사상 과실책임주의의 기본 원칙과 입증책임 구조를 훼손할 우려가 크고,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전문 보안체계를 갖추기 어려워 고도화되는 해킹 공격에 대해 무과실을 직접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 기업이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면 개인은 이를 반증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곤란하므로, 실질적인 정보주체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업 등이 개인정보 유출책임 전반에 대한 입증을 하도록 하여 법정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또한,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출된 경우를 입증하면 면책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유출사고 발생 “결과”만으로 조건 없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규율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

□ 또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면책요건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했을 것’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의견(법무부)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면책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관련 입법례에서도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면서 관계 법령상 요건이나 책무를 다한 경우에는 일부 책임을 면제하거나 인과관계 추정을 배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참고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⁵⁾ 제6조에서도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동 법 제9조에서는 관계 법령상 요건을 모두 준수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등 사업자의 책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피해 발생에 관한 인과관계 추정이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오염피해가 그 시설 운영 중단 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인과관계의 추정) ①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상태와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개정 2020. 5. 26.>

③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추정은 배제된다.

「전자금융거래법」 6)에서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이용자 등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6)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3. 5. 22.>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제목개정 2013. 5. 22.]

3. 법정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안 부칙 제3조)

- 각 개정안은 부칙 제3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부칙

제3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안들에 따르면,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개정규정은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됨.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⁷⁾,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건에 대해 그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소급적용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즉,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실 등 법 개정 전에 발생한 사실을 요건으로 하는 법률

7)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관계에 대해서,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소급입법과 관련하여, 헌법 제13조제2항⁸⁾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금지되지만,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됨⁹⁾.

- 개인정보 유출등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하였지만 그로 인한 손해가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손해 발생에 대한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 개인정보처리자의 신고 및 통지가 지연될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될 수 있어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의 적용 시점을 유출 시점으로 한정할 경우 권리구제가 미흡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는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하거나 사후에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손해 발생 시점을 특정하기도 어렵다

8) 「대한민국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9) 헌법재판소 1997. 6. 26 자 96헌바94 결정 【토지수용법제71조제7항위헌소원】 합헌 [헌공제22호]

일반적으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소급입법의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이 있으며,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이 금지되는 것은 전자인 진정소급효의 입법이고 소위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개정안과 같이 손해배상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도 있어 보임.

- 다만, 손해배상제도가 행정제재나 벌칙 규정¹⁰⁾¹¹⁾은 아니지만 제도 변경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부진정 소급입법을 통한 재산권 제한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기존 법률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 및 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그 허용 여부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음.

한편, 법 시행 전에 이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이미 재판이 종결된 피해자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함.

- 따라서 개정안들의 부칙과 관련해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10)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11)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법정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은 2015.

7. 24. 개정으로 도입되었는데, 당시에는 “이 법 시행 후에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개인정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여 소급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음.

유사 입법례를 보면, 「저작권법」¹²⁾,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¹³⁾ 등에서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할 때에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 등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바 있고,

「상표법」¹⁴⁾의 경우에는 법 개정 이후 소가 제기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참고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집단소송법안」¹⁵⁾에서도 집단소송의 제기 시점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12) 「저작권법」 부칙 <법률 제11110호, 2011. 12. 2.>

제2조(적용례) 제103조의3, 제125조의2 및 제129조의2부터 제1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3216호, 2015. 3. 11.>

제7조(법정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14) 「상표법」 부칙 [법률 제11113호, 2011. 12. 2., 일부개정]

제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 제67조의2 및 제92조의7부터 제92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것부터 적용한다.

15) 2024. 8. 16. 백재현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02896), 2026. 4. 9.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8210) 등 14건의 집단소송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

4. 자료보전 명령 도입(김용만의원안 제63조)

□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였다고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고 발생 여부의 확인, 원인 분석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 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였다고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의 확인, 원인 분석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 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u>
⑤ ~ ⑦ (생 략)	<u>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 지와 같음)</u>
제7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73조(벌칙) ① ----- ----- -----

현행	개정안
처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②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6. 제63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현행과 같음)

□ 소송절차에서 분쟁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증거가 되는 자료를 훼손 없이 온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 등이 있는데16)17), 개정안에 따른 자료보전 명령은 행정절차의 조사단계에서 필요

16)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3.17.>

④ 제3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6.3.17.>

제377조(신청의 방식) ① 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존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② 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11(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가 제기되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에게 그 자료가 훼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지 아니하도록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자료보전을 명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한 자료를 온전하게 확보하려는 것임. 이와 같이 행정조사에서 자료보전명령을 도입하고 있는 사례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¹⁸⁾에 따른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관련 자료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자료
4. 자료보전의 사유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으로 인하여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당사자”라 한다)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신청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가 제3자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당사자가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당사자가 제3자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의 부담 및 자료보전명령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⑥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가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체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는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업무상 이유 등으로 그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 그 명령을 받은 때의 현상(現狀)대로 그 자료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후 그 자료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당사자에게 소제기를 증명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⑩ 신청당사자가 제9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의 부담 및 자료보전명령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⑪ 제10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⑫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은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⑬ 제1항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2. 19.]

[시행일: 2028. 2. 20.] 제40조의11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항이 있어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2026. 3. 3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

보전명령 제도가 있음.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유사한 내용을 도입하려는 것임.

- 최근에는 다수의 개인정보처리자들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경우 유출 경로와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고 초기에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제대로 보존되어 있어야 함.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초기에 관련 자료를 훼손하거나 폐기하여 유출 피해를 축소·은폐할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¹⁹⁾.

다. <신설 2022. 6. 10., 2024. 2. 13., 2026. 3. 3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침해사고로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6. 10., 2024. 2. 13., 2026. 3. 3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6. 10., 2024. 2. 13., 2026. 3. 3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6. 10., 2024. 2. 13., 2026. 3. 31.>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확인과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6. 10., 2024. 2. 13., 2026. 3. 31.>

⑧ 제3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10., 2024. 2. 13.>

[전문개정 2008. 6. 13.]

[시행일: 2026. 10. 1.] 제48조의4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광 전 직원에 의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사 결과 중 일부(2026. 2. 10. 보도자

이에 개정안은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한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근거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디지털화되어 처리되는 정보의 경우 손쉽게 삭제되거나 수시로 갱신되기도 하므로 사고의 원인 분석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보전 필요성이 큰 영역이라는 점은 인정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였다고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료보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침해사고 ‘의심’만으로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보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온라인쇼핑협회는 ‘사고 발생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료보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료)

② 자료 보전 명령 위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에 따라 쿠팡에 침해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자료 보전을 명령('25.11.19 22:34)하였다. 그러나, 쿠팡은 자료 보전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사 접속기록의 자동 로그 저장 정책을 조정하지 않아, 약 5개월('24.7~11월) 분량 웹 접속기록이 삭제되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접속기록(로그)도 '25.5.23~6.2일 간의 데이터가 삭제되었다. ⇒ (조치 사항) 자료 보전 명령 위반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 웹 로그 삭제 : 수사 의뢰(25.12.31) / 애플리케이션 로그 삭제 : 수사 의뢰(26.2.9)

할 경우, 범죄 혐의나 유출 정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료 보존 요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는 IT 기업의 특성상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며,

- 대한의사협회는 별도의 전문 서버나 관리 인력이 없는 영세 의료기관에 광범위한 접속기록 등 자료 보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행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자료보존 명령에 관한 근거가 지난 2004. 1. 29. 개정으로 도입되었는데, 지난 2026. 3. 31. 개정으로 침해사고 발생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자료보존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음. 다만, 이는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의심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현행 규정상으로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정 부분 접속기록의 보관 및 관리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2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²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점검 및 이의 확인·감독,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 등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또한, 법 위반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²¹⁾,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

2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점검 및 이의 확인·감독
 -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
 - 다. 그 밖에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1)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2. 4.>
- ③ 보호위원회는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
-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14.>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2. 4., 2023. 3. 14.>

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²²⁾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이미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제출 의무 등에 관해서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즉, 개정안과 같은 제도 도입 방안 외에, 현행법에 따른 자료 확보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운영하거나 관련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이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자료보전 명령에 있어서는 보전 대상이 되는 자료의 범위, 보전 기간 등이 중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보전 대상이 되는 자료의 양과 기간 정도에 따라 업무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그 밖에, 현행법 제21조²³⁾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⑦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2023. 3. 14.>

2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30., 2017. 7. 26., 2020. 8. 4.>

23)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

처리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의 자료보전 명령에 따라 자료를 보전하는 경우에도 현행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임(“다른 법령” 외에 “이 법”도 추가하는 등의 방안).

- 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식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조사대상자가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않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에도 제재 수단이 미흡하여 조사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므로, 자료보전명령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유출정보 유통 처벌(박범계의원안·한정애의원안 제59조제2항 및 제71조)

□ 각 개정안은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구매·제공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를 처벌하는 내용임(한정애의원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박범계의원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 행	한정애의원안	박범계의원안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	제59조(금지 행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59조(금지 행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현행	한정애의원안	박범계의원안
이 이용하도록 제공 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 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 조 또는 유출하는 행 위 <신설>	<u>② 누구든지 분실·도 난·유출된 개인정보라 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 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구매 · 제공받거나 다른 사 람에게 제공·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1.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 보를 구매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u> <u>2.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 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 공하거나 유포하는 행 위</u>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	제71조(벌칙) -----	제71조(벌칙) -----

현행	한정애의원안	박범계의원안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략)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 ----- ----- -----. 1. ~ 8. (현행과 같음) 9. 제59조제1항제2호-- ----- ----- ----- ----- ----- ----- ----- ----- 10. 제59조제1항제3호-- ----- ----- ----- -----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제59조제1항제2호-- ----- ----- ----- ----- ----- ----- ----- ----- 10. 제59조제1항제3호-- ----- ----- ----- ----- ----- 11. 제59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구매하거나 제공받은 자 12. 제59조제2항제2호

현행	한정애의원안	박범계의원안
<신설> 3. (생략)	<u>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구매하거나 제공받은 자</u> 4.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u>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한 자</u> 5. (현행 제3호와 같음)	

□ 현행법 제59조는 개인정보의 부정 취득 금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금지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 제71조는 이 법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규제 대상임.

불법 정보임을 알고도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공받은 사람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개인정보 유통 관련 현행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5.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6. 제28조의3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한 자
7. 제28조의3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
8.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3. 14.>

1.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 개정안들은 유출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즉 유출 정보의 후속적인 유통행위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입법 방향인 것으로 보임.

□ 다만, 처벌 대상과 수위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현행법 간 중복 및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불법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하지만, 해당 행위자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현행법상 해당 유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개정안(박범계의원안 제59조제2항제2호)과 같이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다만, 불법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일부 있으므로(현행법 제71조제1호·제2호·제7호·제9호, 제72조제2호), 현재 처벌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추가로 규정하는 방안(예를 들면, 현행법 제71조제10호의 경우에만 “제공 받은 자”도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은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구매하거나 제공받은 자”에 대해 박범계의원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정애의원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음.

현행법 제72조제2호²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제재 수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24)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3. 14.>

1.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한 자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6. 실태점검 정례화(김용만의원안·박범계의원안 제63조의2)

- 개정안들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분야 및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현 행	김용만의원안	박범계의원안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① ~ ⑤ (생략)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분야 및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분야 및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현행법 제63조의2제1항²⁵⁾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25)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① 보호위원회는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

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을 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 위법사항을 발견한 경우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음.

개정안들은 현행법 제63조의2제1항의 실태점검과 별개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이거나,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사전 실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및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상으로도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기는 하나,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민감도나 유출등의 위험도, 유출등이 발생했을 경우의 파급효과 등에 따라 일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할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제64조제3항에 따른 권고를 말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경우, 정기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예방 중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실태점검을 추진 중임.

- 한편, 개정안들은 정기 점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점검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행령²⁶⁾ 등으로 대상이나 주기 등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6)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6. 3. 10.>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시행일: 2026. 9. 11.] 제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②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개정 2024. 3. 12.>

1.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2. 보호위원회가 법 위반 이력 및 내용·정도,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3.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3년마다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2024. 3. 12.>

□ 참고로 개정안들에 대하여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현행법상으로도 사전 점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실태점검을 할 수 있으므로 개정 실익이 크지 않고, 일률적인 정기점검 실시는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임.

7. 자료제출요구·시정조치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김용만의원안·박범계의원안·한정애의원안·한창민의원안 제63조의3 등)

□ 개정안들은 자료제출요구·시정조치 미이행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현 행	김용만의원안	박범계의원안	한정애의원안	한창민의원안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
1. ~ 9의2. (생략)	1. ~ 9의2. (현행과 같음)	1. ~ 9의2. (현행과 같음)	1. ~ 9의2. (현행과 같음)	1. ~ 9의2. (현행과 같음)
<신설>	9의3. 제63조의3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9의3. 제63조의3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9의3. 제63조의3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9의3. 제63조의3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10. ~ 16. (생략)	10. ~ 16. (현행과 같음)	10. ~ 16. (현행과 같음)	10. ~ 16.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64

현 행	김용만의원안	박범계의원안	한정애의원안	한창민의원안
② ~ ⑤ (생략) <신 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3조의3(이행 강제금)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그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3조의3(이행 강제금)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그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3조의3(이행 강제금)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그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조의3에 따른 임시중지에 관한 사항 11. ~ 1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3조의3(이행 강제금)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그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현행	김용만의원안	박범계의원안	한정애의원안	한창민의원안
	<u>이행기한이</u> <u>지난날부터</u> <u>1일당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1일평균매출액의</u> <u>1천분의3의</u> <u>범위에서이행강제금을</u> <u>부과할수</u> <u>있다.다만,</u> <u>매출액이없</u> <u>거나매출액</u> <u>의산정이</u> <u>곤란한경우</u> <u>에는1일당</u> <u>500만원의</u> <u>범위에서이행강제금을</u> <u>부과할수</u> <u>있다.</u> <u>1. 제63조제1</u> <u>항에 따른</u> <u>관계 물품</u> <u>· 서류 등</u> <u>자료를 제</u> <u>출하지 아</u> <u>니 하 거 나</u> <u>거 짓 으 로</u>	<u>이행기한이</u> <u>지난날부터</u> <u>1일당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1일평균매출액의</u> <u>1천분의3의</u> <u>범위에서이행강제금을</u> <u>부과할수</u> <u>있다.다만,</u> <u>매출액이없</u> <u>거나매출액</u> <u>의산정이</u> <u>곤란한경우</u> <u>에는1일당</u> <u>200만원의</u> <u>범위에서이행강제금을</u> <u>부과할수</u> <u>있다.</u> <u>1. 제63조제1</u> <u>항에 따른</u> <u>관계 물품</u> <u>· 서류 등</u> <u>자료를 제</u> <u>출하지 아</u> <u>니 하 거 나</u> <u>거 짓 으 로</u>	<u>이행기한이</u> <u>지난날부터</u> <u>1일당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1일평균매출액의</u> <u>1천분의3의</u> <u>범위에서이행강제금을</u> <u>부과할수</u> <u>있다.다만,</u> <u>매출액이없</u> <u>거나매출액</u> <u>의산정이</u> <u>곤란한경우</u> <u>에는1일당</u> <u>200만원의</u> <u>범위에서이행강제금을</u> <u>부과할수</u> <u>있다.</u> <u>1. 제63조제1</u> <u>항에 따른</u> <u>관계 물품</u> <u>· 서류 등</u> <u>자료를 제</u> <u>출하지 아</u> <u>니 하 거 나</u> <u>거 짓 으 로</u>	<u>이행기한이</u> <u>지난날부터</u> <u>1일당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1일평균매출액의</u> <u>1천분의3의</u> <u>범위에서이행강제금을</u> <u>부과할수</u> <u>있다.다만,</u> <u>매출액이없</u> <u>거나매출액</u> <u>의산정이</u> <u>곤란한경우</u> <u>에는1일당</u> <u>500만원의</u> <u>범위에서이행강제금을</u> <u>부과할수</u> <u>있다.</u> <u>1. 제63조제1</u> <u>항에 따른</u> <u>관계 물품</u> <u>· 서류 등</u> <u>자료를 제</u> <u>출하지 아</u> <u>니 하 거 나</u> <u>거 짓 으 로</u>

현행	김용만의원안	박범계의원안	한정애의원안	한창민의원안
	<u>제출하는</u> <u>경우: 자료</u> <u>의 제출</u> 2. 제63조제2 <u>항에 따른</u> <u>출입·검</u> <u>사를 거부</u> <u>· 방해 또</u> <u>는 기피하</u> <u>는 경우:</u> <u>출입·검</u> <u>사 협조</u> 3. 제64조제1 <u>항에 따른</u> <u>시정조치</u> <u>명령을 따</u> <u>르지 않는</u> <u>경우: 시정</u> <u>조치 명령</u> <u>의 이행</u> 4. 제64조제4 <u>항에 따른</u> <u>긴급 보호</u> <u>조치 명령</u> <u>을 따르지</u> <u>않는 경우:</u> <u>긴급 보호</u> <u>조치 명령</u> <u>의 이행</u>	<u>제출하는</u> <u>경우 또는</u> <u>제2항에 따</u> <u>른 출입·</u> <u>검사를 거</u> <u>부·방해</u> <u>또는 기피</u> <u>하는 경우</u> : <u>자료의</u> <u>제출 또는</u> <u>출입·검</u> <u>사 협조</u> 2. 제64조제1 <u>항에 따른</u> <u>시정조치</u> <u>명령을 따</u> <u>르지 않는</u> <u>경우 : 시</u> <u>정조치 명</u> <u>령의 이행</u> 3. 제66조제2 <u>항에 따른</u> <u>공표명령</u> <u>을 따르지</u> <u>않는 경우</u> : <u>공표명령</u> <u>의 이행</u>	<u>제출하는</u> <u>경우 또는</u> <u>같은 조 제</u> <u>2항에 따른</u> <u>출입·검</u> <u>사를 거부</u> <u>· 방해 또</u> <u>는 기피하</u> <u>는 경우:</u> <u>자료의 제</u> <u>출 또는 출</u> <u>입·검사</u> <u>협조</u> 2. 제64조제1 <u>항에 따른</u> <u>시정조치</u> <u>명령을 따</u> <u>르지 아니</u> <u>하는 경우:</u> <u>시정조치</u> <u>명령의 이</u> <u>행</u> 3. 제66조제2 <u>항에 따른</u> <u>공표명령</u> <u>을 따르지</u> <u>아니 하는</u> <u>경우: 공표</u> <u>명령의 이</u>	<u>제출하는</u> <u>경우: 자료</u> <u>의 제출</u> 2. 제63조제2 <u>항에 따른</u> <u>출입·검</u> <u>사를 거부</u> <u>· 방해 또</u> <u>는 기피하</u> <u>는 경우:</u> <u>출입·검</u> <u>사 협조</u> 3. 제64조제1 <u>항에 따른</u> <u>시정조치</u> <u>명령을 따</u> <u>르지 아니</u> <u>하는 경우:</u> <u>시정조치</u> <u>명령의 이</u> <u>행</u> 4. 제64조의3 <u>제1항에 따</u> <u>른 임시중</u> <u>지 명령을</u> <u>따르지 아</u> <u>니하는 경</u> <u>우: 임시</u> <u>중지 명령</u>

현행	김용만의원안	박범계의원안	한정애의원안	한창민의원안
	5.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공표명령의 이행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행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의 이행 5.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표명령의 이행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과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

현 행	김용만의원안	박범계의원안	한정애의원안	한창민의원안
			<u>따른다.</u>	<u>터 제3항까</u> <u>지에서 규</u> <u>정한 사항</u> <u>외에 이행</u> <u>강 제 금 의</u> <u>부과 · 징수</u> <u>에 관하여</u> <u>는 「행정</u> <u>기 본 법」</u> <u>제31조 제2</u> <u>항부터 제6</u> <u>항 까 지 에</u> <u>따른다.</u>
제 75 조 (과 태 료) ① (생 략)	제 75 조 (과 태 료) ① (현 행과 같음)	제 75 조 (과 태 료) ① (현 행과 같음)	제 75 조 (과 태 료) ① (현 행과 같음)	제 75 조 (과 태 료)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 한다.	②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②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②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 ~ 24. (생 략)	1. ~ 24. (현 행과 같음)	1. ~ 24. (현 행과 같음)	1. ~ 24. (현 행과 같음)	
<u>25. 제63조제</u> <u>1 항 (제 26</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현행	김용만의원안	박범계의원안	한정애의원안	한창민의원안
<u>조 제8항에</u> <u>따라 준용</u> <u>되는 경우</u> <u>를 포함한</u> <u>다)에 따른</u> <u>관계 물품</u> <u>· 서류 등</u> <u>자료를 제</u> <u>출하지 아</u> <u>니 하 거 나</u> <u>거 짓 으 로</u> <u>제출한 자</u>				
26. 제63조제 2항(제26 조 제8항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 를 포함한 다)에 따른 출입·검 사를 거부 · 방해 또 는 기피한 자	<삭 제>	<삭 제>	<삭 제>	
27. 제64조제 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 르지 아니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	김용만의원안	박범계의원안	한정애의원안	한창민의원안
<u>한자</u>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u>제64조의3 (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임시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u> ④·⑤ (현행과 같음)

□ 현행법상 각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법 제64조), 고발 또는 징계 권고(법 제65조), 결과 공표 명령(법 제66조) 등을 할 수 있

고, 금전적 제재로 과징금(법 제64조의2)이나 과태료(법 제75조)를 부과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규정(법 제70조부터 제74조)도 두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개정안은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려는 것임.

□ 이행강제금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행강제력이 크고, 위반행위별로 상한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과태료와 달리, 각 개정안에서는 일(日) 매출액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에게는 그에 비례해서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이행강제금을 도입할 경우 각종 의무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는 데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온라인쇼핑협회는 현행법상 조사 불응이나 시정조치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벌금 및 과태료 등 제재수단이 이미 존재하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과,

지난 2026. 3. 10. 법 개정 시,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10% 이내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력을 제고한 바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성도 있어 보임.

- 둘째, 개정안들은 시정조치 등의 명령 불이행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²⁷⁾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참고로, 현행법상 자료제출 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⁸⁾.

27)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를 말한다.

28)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5.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6.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는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과태료를 부담하고 자료제출은 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구조이므로²⁹⁾, 자료제출 의무의 신속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와 같이 자료제출 의무 위반 전체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부과 대상을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원인 규명이나 피해 확산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자료요구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요구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최근 신설되었음.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자료제출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및 법 위반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단순 혐의 단계에서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법 하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만 부담하면 조사에 계속 불응할 수 있어 실질적인 자

29) 자료제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도 있으나, 현재 법령상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위반시 600만원, 3회 위반시 1,0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도임.

료 확보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특히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자료 확보 지연으로 피해 확산 방지 및 적시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자료제출 거부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자료 제출 강제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임.

<자료제출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입법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81조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이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의의 결정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 21.>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1조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가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료나 물건이 제50조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1., 2025. 10. 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당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재제출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

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⑥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7(이행강제금)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제85조의8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장부등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통지하는 날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평균수입금액이 없거나 평균수입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장부등의 제출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및 감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의7(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의 이행,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협조를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만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3. 31.]

[시행일: 2026. 10. 1.] 제48조의7

- 셋째, 개정안별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이행강제금의 1일당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적정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매출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에서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넷째, 3개 개정안(한정애의원안·박범계의원안·김용만의의원안)에서는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에 대한 중복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행강제금을 신설하면서,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처분 규정은 삭제하고 있고,

한창민의의원안은 과태료 규정은 존치하면서, 과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을 존치하는 것이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 등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제재수단을 정할 수 있는 판단여지를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다섯째, 각 개정안은 부칙에서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음. 행정처분과 관련한 개정 시,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라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즉, 개정안들에 따르면, 이행강제금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 법 시행 이후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들의 내용이 법 시행 후 자료제출 요구가 있거나 법 시행 후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자료제출 요구나 시정명령에 대해 응하지 않는 상태가 법 시행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개정안(김용만의원안·박범계의원안·한정애의원안)의 부칙 중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서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법 시행 전의 자료 미제출, 시정조치 미이행 등의 상태가 법 시행 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개정규정에 따른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개정안의 이행강제금 적용례 조문대비표>

김용만의원안	박범계의원안	한정애의원안	한창민의원안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u>과태료</u> 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u>과태료</u> 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u>과태료</u> 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제4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제4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김용만의원안	박범계의원안	한정애의원안	한창민의원안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u>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u> 또는 제64조제4항에 따른 긴급 보호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u>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u>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u>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u>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u>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u> 또는 제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8. 긴급보호조치 명령 또는 임시중지명령 근거 신설(김용만의원안 재64조·한창민의원안제64조의3 등)

□ 김용만의원안은 법 위반이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침해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위원회가 즉시 침해행위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64조). 개정안 제63조의3에 따르면, 긴급조치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창민의원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고,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각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임시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임시중지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김용만의원안	한창민의원안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 ③ (생략) <신설>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	 <u>제64조의3(임시중지명령)</u>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

현행	김용만의원안	한창민의원안
	<u>정보처리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이 법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침해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u>	<u>정보처리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중지,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이하 “임시중지”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할 수 있다.</u> <u>1.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u>2. 다수의 정보주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u> <u>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u>

현행	김용만의원안	한창민의원안
		<u>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호위원회에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u> <u>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u> <u>⑤ 제4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u>

현행	김용만의원안	한창민의원안
제75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u><신설></u> ④·⑤ (생략)		<u>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제7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_____ -----. 1. ~ 4. (현행과 같음) 5. 제64조의3(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⑤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64조제1항³⁰⁾에 따라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

30)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인 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음. 이는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후에 가능한 행정처분으로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등이 종료된 후에 이루어지게 됨.

한편,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현행법 제34조³¹⁾에 따라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포함한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한 측면이 있음³²⁾.

31)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회수·삭제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026. 3. 10.>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2026. 3. 10.>

⑤ 제1항·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제4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3. 14., 2026. 3. 10.>

[제목개정 2023. 3. 14., 2026. 3. 10.]

[시행일: 2026. 9. 11.] 제34조

32) 다만, 과징금을 산정할 때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5.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의 규모
6.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7.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8.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9.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10.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11. 보호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경우 그 특성상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긴급하게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 다만, 긴급보호조치 또는 임시중지 등을 도입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피해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다수 소비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인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처리의 중지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나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유사한 입법례가 있기는 하나,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기만이나 대금 미지급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해당 상거래 자체를 긴급하게 중지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인 반면,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이용, 신속한 정상화 등을 요구하는 수요 또한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인정보 처리의 중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 장애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되, 개인정보의 유출의 원인 분석과 피해 확산을 위한 보안 조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추가적으로, 긴급·임시조치의 유효 기간이나 피해 우려가 해소된 경우 조치 해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현행법상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긴급보호조치를 추가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점, ‘의심’만으로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점,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처리는 핵심 요소로서 개인정보 처리를 중지할 경우 서비스 전체의 운영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의견을 제시함.

대한의사협회는 긴급보호조치 등으로 인해 전자의무기록 또는 처방전달 시스템 등 필수 의료정보시스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진료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나 공백이 발생하여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그 밖에, 김용만의원안의 경우 법 위반이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의심”만으로도 긴급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의견도 제시됨. 이와 관련하여 한창민의원안의 경우 법 위반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는 유사 입법례가 각각 두 가지 모두 존재함(「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임시중지명령 등과 관련한 유사 입법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0(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작성·운용하고,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하여 피해 확산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조치 사실을 통지할 것
2.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해지 방법을 제공할 것

④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약관과 다르게 특정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매뉴얼, 이용자 보호조치의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해지 방법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3. 31.] [시행일: 2026. 10. 1.] 제32조의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4(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이하 “임시중지”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0.>

1.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시중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 1. 20.>

③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0.>

④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시행일: 2026. 7. 21.] 제32조의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행위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표시·광고 행위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2. 그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행위가 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표시·광고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한편, 한창민의원안의 경우 임시중지명령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비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다툼의 정도에 따라 신속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고, 재판이 종결되거나 보호위원회의 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임시중지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단이 장기화될 우려도 없지 않음.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임시중지명령은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실상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일반적인 행정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또한, 한창민의원안의 경우 소비자단체가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4의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사항과 동일한 내용임.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임시중지 명령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 권한은 현행법상으로도 누구든지 신고·제보할 수 있는 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요청 남용으로 인한 행정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9. 영업정지 요청 근거 마련(한창민의원안 제64조제4항)

□ 개정안은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 시정조치만으로는 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호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1.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신 설>	2.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
<신 설>	3. 시정조치만으로는 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 정지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법 제64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법 제75조제2항제27호).

그러나,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반복되거나 피해 방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업정지 등 실효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시정조치만으로는 피해 방지가 어렵고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등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타 법률에서 영업정지 등의 요청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없지는 않으나(「산업안전보건법」³³⁾),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요

33)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건은 영업 허가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³⁴⁾이 의결 전제 법안으로 함께 제안되어 있음(“「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를 영업정지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

해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유출 또는 도용되어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사업자가 피해 회복 등 필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의 요청 없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침해에 대한 제재는 일차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에 관한 문제이므로 다른 기관에 요청하는 것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 정지·제한 등 직접적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입법 취지, 집행의 실효성, 예방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34) 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8221호

문 의 처
02)6788-5104

[참고자료] 법정손해배상청구 관련 입법례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8.8.>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2023.8.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

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2024.1.16. 제정]

제43조(손해배상책임) ① 채권추심회사등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등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회사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경우로서 채권추심회사가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채권추심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29조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권추심회사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임직채권추심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9항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을 관리할 때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금융회사등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채권추심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4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추심회사등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추심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같은 항에 따른 손해액 상한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

정할 수 있다.

④ 제43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개인금융채무자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②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3.11., 2020.2.4.>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재산상태
7.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분실·도난·누출 후 해당 개인신용정보 회수 노력의 정도
8.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2020.2.4.>

⑤ 신용정보회사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5.3.11., 2020.2.4.>

⑥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5.3.11., 2020.2.4.>

⑦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위임직채권추심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 선임 및 관리에 있어서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2020.2.4.>

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0.2.4.>

1. 삭제 <2020.2.4.>

2. 삭제 <2020.2.4.>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변경 및 법원의 손해액 인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③ 삭제 <2020.2.4.>

[본조신설 2015.3.11.]

문 의 처

02)6788-5104